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를 폐지하고,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처벌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2024. 5.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별표2)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별표3)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법 제84조제 3항제7호	50	150	250
--------------------------------------------------	------------------	----	-----	-----

별표 3 제3호 중 “법 제81조제2호”를 “법 제80조제1호”로 한다.

##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